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최근 1년간 총 14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그 중 13건이 소관위 심사를 마친 상태임. 이 중 보험업과 관련된 내용은 총 1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보험의 허용,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부여, 고령금융소비자 개념 도입 및 설명의무 강화, 금융피해 방지조치 등 보호 강화, 보장성상품 중도해지 시 설명의무 부과 등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¹⁾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총 26건으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바, 이 중 최근 1년간 새로 발의된 개정안만 총 14건에 이룸
 - 법 제정 직후인 2020년 발의된 개정안들은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등 보다 강력한 사후적 구제장치를 도입하거나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임²⁾
 -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금융지원 등 명령권과 금융교육 강화 등 보다 다양한 쟁점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됨³⁾
 - 이하에서는 2022년 발의된 개정안⁴⁾ 중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12건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험(생명·손해)을 함께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됨(윤관석 의원안, 제2113721호)
 - 신용보험은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미성년자 등 경제능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부채가 상속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판매가 활발하지 않음
 - 대출 권유 시 신용보험을 함께 권유하는 경우 현행법상 금지되는 대출결부 부당행위(이른바 '깍기')로 판단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부당권유행위(법 제21조)의 예외로 규정하여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폐단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깍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보다 대출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제1항)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⁵⁾

1) 2022. 12. 14. 현재

2) 양승현(2020),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리뷰』, 제7호

3) 양승현(2021),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리뷰』, 제14호

4) 2021. 12. 7.~2022. 12. 14.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말함

○ 금융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분쟁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됨(이정문 의원안, 제2114898호)

- 조정중재원 설립: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금융분쟁조정기구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함
 -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비용·인력 부담 증가, 업무 중복·공백, 검사기능과 연계성 약화 등 우려를 표명하였으며⁶⁾ 금융업계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재원 측면에서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⁷⁾
- 편면적 구속력: 금융소비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임⁸⁾
 - 이는 소비자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지만, 금융업계는 물론 금융감독당국도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⁹⁾하는 등 위헌 소지에 대한 비판이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분쟁중재 도입: 조속하고 종결적 분쟁해결을 위해 기존의 금융분쟁조정 제도에 더해 당사자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단심제로 확정판결과 같이 결과(중재판정)에 구속되는 금융분쟁중재 제도를 도입함
 - 신속·효율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견해도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양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특성상 심의·의결과정의 공정성 및 중재인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⁰⁾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4건 발의됨(홍성국 의원안, 제2115381호, 이상헌 의원안, 제2115528호, 최형두 의원안, 제2116081호, 임종성 의원안, 제2116356호)

- 정의: 홍성국 의원안과 임종성 의원안은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하며, 임종성 의원안은 가족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피해’¹¹⁾ 개념을 도입함
 - 금융위원회는 조문별로 고령자 범위에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됨¹²⁾
 - ‘금융피해’는 제3자에 의한 금융착취로, 금융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주된 입법 목적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두기보다 별도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¹³⁾
- 차별금지: 홍성국 의원안과 임종성 의원안은 기존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학력 등 외에 나이(연령)를 추가함
- 영업행위 규제: 계약체결 시 고령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고(최형두 의원안),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더욱 알기 쉬운 방법의 설명, 설명서 제공 또는 확인 등 설명의무를 강화(최형두·홍성국 의원안)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5) 이용준(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부당권유행위 예외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p. 9
 6) 이용준(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 국회 정무위원회, pp. 13~14
 7) 이용준(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 국회 정무위원회, p. 14
 8) 한편 소액분쟁사건의 경우에 한해 금융분쟁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용우 의원안, 제2102904호)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9) 이용준(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 p. 21
 10) 이용준(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 pp. 25-26
 11)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기망, 공갈, 협박, 강요, 위력,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사용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함(안 제2조제12호)
 12)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p. 17
 13)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p. 43

- 현행법은 이미 '모든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명 방식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설명 부담 증가로 고령자 배제 가능성이 있는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이 존재함¹⁴⁾
 - 내부통제기준: 이상헌 의원안은 고령자의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게 하고, 임종성 의원안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게 함
 - 금융피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의심거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홍성국·임종성·이상헌 의원안)하거나, 금융거래처리 지연·정지 및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홍성국·임종성 의원안)를 할 수 있게 하고,¹⁵⁾ 해당 조치로 피해 발생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판매업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임종성 의원안)함
 - 금융감독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보고체계와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할 때 구체적 도입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⁶⁾
 -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정책·시책마련(이상헌·임종성 의원안), 금융교육, 고령금융소비자 대상의 알기 쉬운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마련 및 과징금 부과 시 고령금융소비자 여부 고려(홍성국 의원안)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분야 표준약관의 제·개정 필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이정문 의원안, 제2115939호)
- 금융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여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이 없고, 개정안이 목적하는 바는 약관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⁷⁾
-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상품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이정문 의원안, 제2115969호)
- 구체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i) 해약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 (ii)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변경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담 또는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함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규율하므로, 계약 해지 시점의 설명의무는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함¹⁸⁾
 - 한편, 이미 계약체결 권유 시 해약환급금과 손실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있고, 추가적 설명·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속·간편한 처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됨¹⁹⁾

14)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pp. 31~34

15) 홍성국 의원안은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등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6)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p. 42

17)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pp. 8~9

18) 고상근(20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보장성 상품 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국회 정무위원회, p. 11

19) 고상근(20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보장성 상품 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국회 정무위원회, p. 12

○ 긴급한 경제상의 위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최기상 의원안, 제2116789호)

- 현행법상 약관 변경 권고·명령은 약관 내용의 불공정, 위법이나 소비자 이익 침해 등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금리상승기에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i) 경제 위기 등 계약 외부 요인으로 인한 조치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ii) 정부의 약관 변경 요청으로 사적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보상조치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됨²⁰⁾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하고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임(유동수 의원안, 제2116145호)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신탁 외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임(김병욱 의원안, 제2116173호)
- 대출상품 권유 시 원리금 상환 지체시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일부 상환 지체 시 지체된 부분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박홍근 의원안, 제2118178)

20)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경제위기 시 금융위원회에 약관변경 요청권 부여>』, 국회 정부위원회, pp. 6~7

〈표 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목록

번호	의안번호	의안명(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진행 상황
1	211372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2021. 12. 7.	대출계약 시 신용보험(생명·손해) 권유 허용	소관위심사
2	211489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2022. 3. 18.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관위심사
3	211538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2022. 4. 25.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차별금지, 설명의무, 피해사례 보고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소관위심사
4	211552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2022. 5. 9.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정책수립, 피해사례 보고, 내부통제기준 등)	소관위심사
5	211593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2022. 6. 14.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	소관위심사
6	211596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2022. 6. 15.	보장성상품 중도해지 시 설명의무 신설	소관위심사
7	211608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2022. 6. 22.	고령금융소비자보호(설명의무)	소관위심사
8	211614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2022. 6. 27.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	소관위심사
9	211617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2022. 6. 28.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법 적용대상 확대	소관위심사
10	211635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2022. 7. 7.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차별금지, 직무기준 마련, 금융피해 의심거래의 처리 지연 등)	소관위심사
11	211678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2022. 8. 5.	금융위원회의 약관 변경 요청권 신설	소관위심사
12	211817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흥근 의원)	2022. 11. 9.	대출금 상환 지연손해금 설명의무 및 일부 상환 지체 시 지연손해금 제한	소관위접수